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14 호

2006년 10월 10일 화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4호(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개정
규칙) 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7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을, “업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출장소·동(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투자기관을 "투자기관"으로 한다.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과관리" 라 함은 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와 제11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업무 등의 평가"를 "업무평가"로 한다.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 ②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과 그 외 필요한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고 평가관련 업무추진 부서를 정하여 평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의 "하부기관"을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 ①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실·과·직속기관 및 출장소 등(이하"평가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자체평가의 실시)"를 "(자체평가)"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2항 중 “평가”를 “자체평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후단의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한다”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로 한다.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수시평가의 실시)”를 “(수시평가)”로 한다.

제9조 제목 “(기관평가의 실시)”를 “(기관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합동평가의 실시)”를 “(합동평가)”로 하고 본문중 “업무 등의 평가”를 “업무평가”로 한다.

제14조 제목 “(평가계획의 작성)”을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평가”를 “자체평가로”, “평가계획을 작성”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평가계획”을 “자체평가계획”으로 한다.

동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 제목 “(평가의 실시)”를 “(자체평가의 실시)”로 하고, 내용 중 “평가계획”을 “자체평가계획”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7인 이상 10인”을 “10인 이상 15인”으로 한다.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평가업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기획담당”을 “자체평가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29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가위원이 평가 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전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2006. 3. 24)되어 2006. 4.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규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 운영중인 규칙 중 미비점 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체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업무평가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평가, 자체평가, 성과관리』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자체평가 과정 체계화 및 재정립을 위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함(안 제14조).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업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제2항).